

4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조문중 제130조와 제131조의 정확한 내용은

● 답 : 제130조는 정당한 신고의무자가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고
제131조는 최고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경우임.

5. 토 론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1997. 10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